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설명회

2020. 2. 26. (수)

CONTENTS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추진 계획

01 · 추진배경
02 · 사업개요
03 · 과제지원내용
04 · 추진절차
05 · 수행기관 의무사항
06 · 파견인력 유의사항
07 · 평가기준 및 절차
08 · 추진일정 및 신청안내
09 · 예산 활용 예시
10 · FAQ

IITP

01 [추진배경

주요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등이 가세하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각축전** 양상

핵심기술 분야에서 뒤쳐진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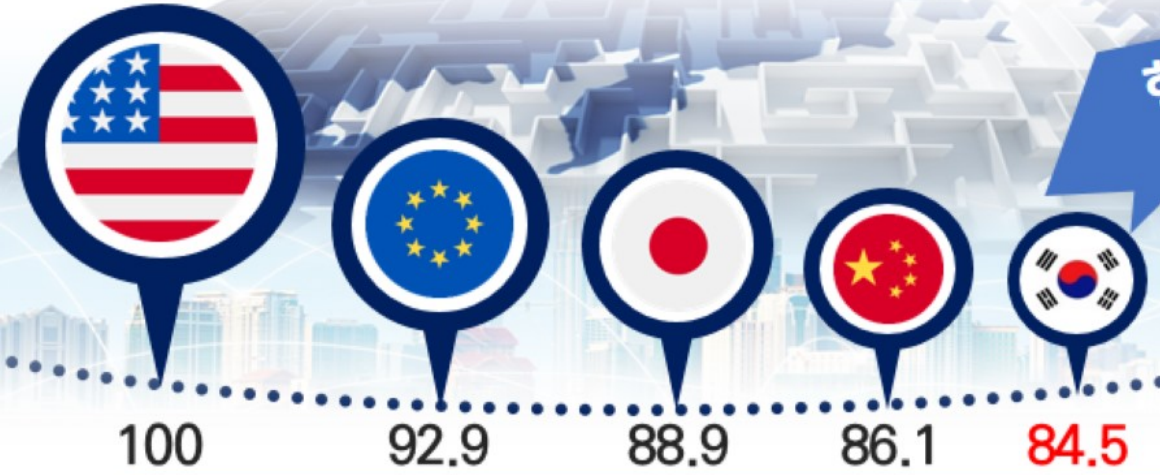

ICT 핵심기술 분야 해외 주요국 vs 우리나라 **기술수준 및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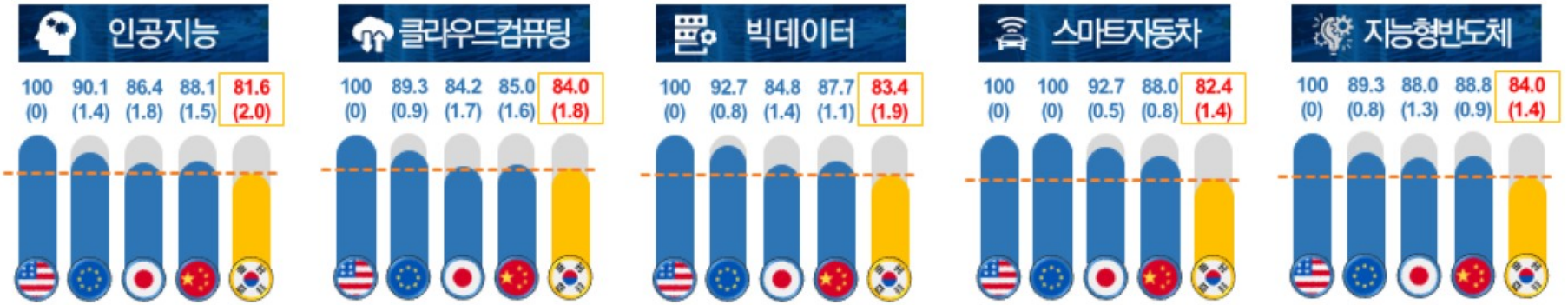

ICT 기술수준조사 ('18. IITP)

01 [추진배경

ICT핵심기술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고급인재 육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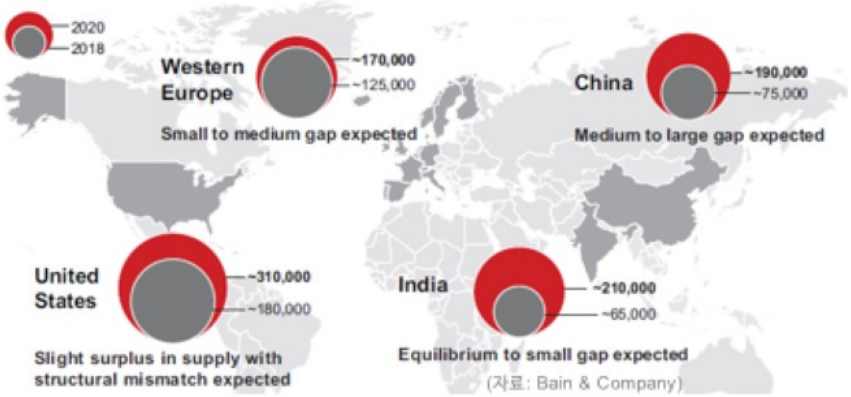

(자료: Bain & Company)

☑ 전세계 데이터 전문가는'18년 50만 명에서 '20년 100만 명으로 **2배 증가 전망** (Bain&Company, '19.5)
* 특히 인도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 전망

☑ 국내는 '20~'22년까지 AI, 클라우드 등 ICT 핵심분야 고급인재 **1.5만명 부족 예상** (SPRI, '18.4)

부족한 국내 AI 인력 | 총 7,270명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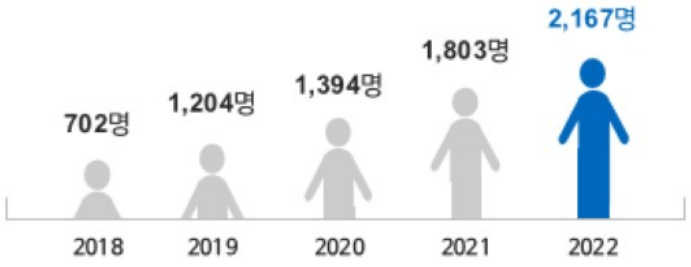

(자료: SPRI)

글로벌 기업은 고급인재 쟁탈전

☑ 구글 삼성전자 '빅스비' 개발한 이인종 부사장을 스카우트

☑ 삼성전자 MS 래리 헥 박사 스카우트

☑ SK텔레콤 스웨덴 머신러닝국제학회(ICML)을 통한 AI전문가 채용

☑ 네이버 후원하는 글로벌 AI 관련학회 5개에서 9개로 확대

☑ LG전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와 함께 AI 전문 연구소 설립

01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18.12월, 과기부)
정부는 2023년까지 전략적으로 혁신인재 1만 명 양성 추진

~2023년

인공지능 대학원

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AI 전문 교수 확보 등을 통한
세계적 선도연구자 인력 양성

AI 대학원 → 860명

2020년 126억 원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서 혁신성장 선도기술 연구경험 습득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 연구인력 양성
범부처 공동 추진 (과기정통부, 산업부 , 복지부)

2,250명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현장수요 중심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8대 분야의
SW 실무인력 양성

7,000명

02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서 ICT유망 기술 분야 해외 유수기관과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실무 경험 제공으로 글로벌 고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규모
Business scale

- 2020년 126억 원, 석·박사 160명

사업기간
Business period

- 2020년 6월 ~ 21년 5월 (12개월)

지원분야
application field

ICT기술선도분야

AI | BigData | Cloud | AR/VR | Block Chain | ICT SW융합

지원대상
Target for support

한국 국적의
국내 대학원 ICT/SW분야 석·박사 재학생

'19~'23년까지 매년 160명을 파견,
글로벌 핵심인재 800명 양성

02 [사업개요 : 2020년 지원 과정 개편

기존 고정된 지원과정(협력프로젝트, 인턴십, 위탁교육)에서 벗어나,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대학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과제 제안 가능

2019년 지원 과정

사전 설계된 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과제 지원

- 협력 프로젝트
- 인턴십
- 위탁교육

2020년 개편 방향

대학의 자율성 확대

- ✓ 자율성강화
- ✓ 과제단순화
- ✓ 과제기간 12개월

희망 과정 수 = 신청 과제 수
행정 중복 등 부담

VS

공동연구, 인턴십을 동시에
하고싶으면 1개 과제로 신청 가능

03 [과제 지원 내용

지원대상 Target For Support

국내 대학(원)소속 ICT SW 석박사 학생

과제내용

공동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하거나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수행

지원내용

- (과제형태) 국내 주관대학 단독(복수학과가능) 또는 복수의대학 컨소시엄으로 1개이상과제 참여가능(6~12개월)
- (파견인원) 과제당 최대 20명
- (과제기간/파견기간) '20. 6. 1 ~ '21. 5. 31 (12개월) / 최소 6개월
- (주관기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국내대학(원)
- (해외 협력기관) 국제 협력 과제 수행이 가능하며, 파견인력 수요가 있고 연구 지도가 가능한 4차 산업기술 선도국 소재 대학 및 연구소, 기업

03 [과제 지원 내용

파견인력 1인당 지원한도 내에서 과제당 최대 10억 원 지원

* 과제기간('20.6.1~'21.5.31) 집행액만 인정 (과제 시작 전 집행 불가)

유형별 지원 비목

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 (학점연계)
X	X	교육비
연구비	운영비	운영비
준비금	준비금	준비금
체재비	체재비	체재비
인건비	인건비 (연구활동지원비)	X

(인턴십) 해외기관에서 지급받는 체재비용이 최소 인건비에 못미치는 경우 차액을 연구활동지원비로 지급가능

파견인력 1인당 유형별 지원 한도

* 1인당 지원 금액은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과제비를 1인당 지원액으로 편의상 표기

공동연구	1억 원 (과제 1년, 파견 6개월)
인턴십	60백만 원 (과제 1년, 파견 12개월)
자율(학점연계)	70백만 원 (과제 1년, 파견 6개월)

* 박사(파견기간 중 참여율 100%) 1인 기준

과제당 최대 10억 원

✓ 공동연구, 자율과정

과제 독식 방지
과제 품질 유지

과제당 최대 20명

✓ 인턴십

많은 인원 혜택 부여
과제 행정부담 경감

과제 최대 지원 한도(예시):

- 3인 : 공동연구(1인/1억)+자율과정(1인/0.7억)+인턴십(1인/0.6억) = 2.3억 원
- 2인 : 공동연구(1인/1억)+자율과정(1인/0.7억) = 1.7억 원
- 1인 : 자율과정+인턴십 = 7천만 원

03 [과제 지원 내용 : 지원 가능한 유형

공동연구

해외파견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해외 파견 6개월이상)

국내·외 기관이 공통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이를 위한 국내 석·박사생 해외파견 지원**

해외 파견 기관	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해외 산학연)
지원 내용	연구비 및 파견지원비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 최대 1억 원 지원)

인턴십

해외파견 인턴십

(과제기간 12개월 ,
해외파견 6개월이상)

해외 ICT 선도기술 분야 기업 및 연구소에서의 **실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국내 석·박사생 해외 인턴파견 지원**

해외 파견 기관	해외 기업 및 연구소 등
지원 내용	파견지원비 등 (인건비, 체재비, 과정 운영비 등 최대 60백만 원 지원)

자율과정(학점연계)

학점연계형 자율설계

(과제기간 12개월, 해외파견 6개월)
*권장 최소 인정 학점 : 자율결합 : 3학점
자율단독 : 6학점

해외 우수대학/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학점연계형 과정을 발굴, 국내 석·박사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파견 지원**

해외 파견 기관	해외 대학, 연구소 등
지원 내용	파견지원비 등 (교육비, 체재비 등 최대 70백만 원 지원)

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 등 필요한 과정을 결합해 과제를 구성(12개월)

03 [과제 지원 내용 : 수행유형, 과제유형 예시

연구목표 및 범위에 따라 사업 수행체계를 다양하게 구성 가능

유형 1	국내대학 단일학과, 단일 해외기관	예 OO대학 OO학과, 미국 A기관 파견
유형 2	국내대학 다수학과, 다수 해외기관	예 OO대학 <A, B학과>, 미국 C, D기관 파견
유형 3	다수 국내대학, 단일 해외기관	예 A대학 <OO학과>, B대학 <OO학과>, 미국 C기관 파견
유형 4	다수 국내대학, 다수 해외기관	예 A대학 <OO학과>, B대학 <OO학과>, 캐나다 C기관, 중국 D기관 파견

과제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 가능 (예시)

공동연구	공동연구만으로 과제 수행(1년), 과제 기간 중 최소 6개월 파견
인턴십	인턴십만으로 과제 수행(1년), 과제 기간 중 최소 6개월 파견
자율(학점연계)	자율과정만으로 과제 수행(1년), 과제 기간 중 최소 6개월 파견
공동연구+인턴십	과제기간 1년, 공동연구와 인턴십을 결합, 과제기간 중 최소 6개월 파견
공동연구+자율	과제기간 1년, 공동연구와 자율과정을 결합, 과제기간 중 최소 6개월 파견
인턴십+자율	과제기간 1년, 자율과정과 인턴십을 결합, 과제기간 중 최소 6개월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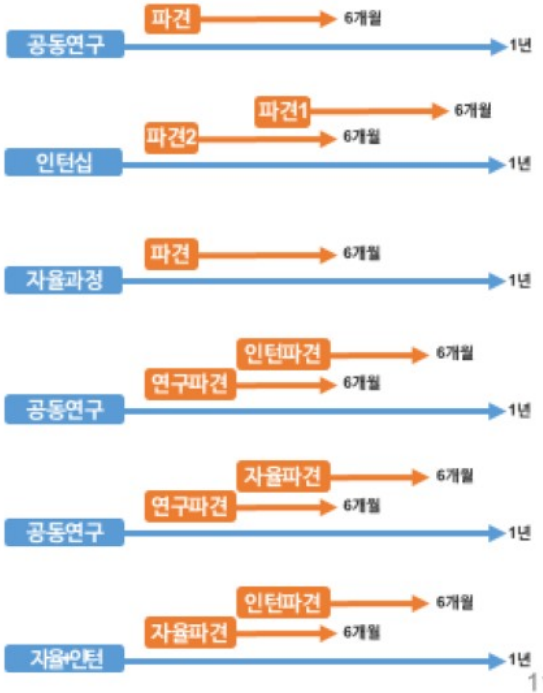

04 [추진 절차

해외협력 네트워크 보유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대학은 양 기관 협의 하에 과제를 발굴, 사업 신청

01	02	03	04	05	06
공동협력 과제발굴	파견학생 선발	과제 선정	출국 준비 (비자발급 등)	과제 수행 및 해외 파견	귀국 및 결과 보고
	*인턴십은 선발계획으로제출 가능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국내대학 중
해외기관에서발굴한제안서를참고하여협업하고자하는 국내대학은아래절차에따라과제발굴

01	02	03
협력 과제 제안서 검토 (공고 게시물 별첨)	해외기관에 개별 연락하여 협업의사 확인	과제 계획 및 파견 계획 수립

- 전문기관(IITP)에서 사전 공고를 통해 발굴된 해외 기관의 협업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 대학은 각 과제 제안서*를 미리 검토 후 **협업을 희망하는 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내용 및 파견계획 등 수립 후 1개의 사업신청서로 제출**
  * 제안서는 재외과학자협회(미국, 캐나다) 등을 통해 접수된 과제이며 제안서 별도 첨부 확인
- 제안서를 제출한 해외대학과 협업 시 연구비를 협의하여 결정 **(파견인력 1인당 최대 약 2,500만원 권장)**
-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 **해외 대학 연구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권장)**

05 [수행기관 의무사항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중간점검 및 평가, 성과발표 등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함
-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과제는 예산활용 적정성 검토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과제 관리 및 파견자 출국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함
- 과제 신청시 해외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에 대한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고, 해외 기관 과제 책임자 서명이 있는 '참여의향서' (LOI 양식 – 사업신청서 내 양식)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과제형태에 따라 해외협력기관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편성·지급하며,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권장)
- 주관/공동연구기관은 협력하는 해외협력기관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
- 주관기관에서 과제를 인턴십 만으로 설계 시, 주관기관의 산학협력단, 국제협력 조직의 장 등 행정조직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담당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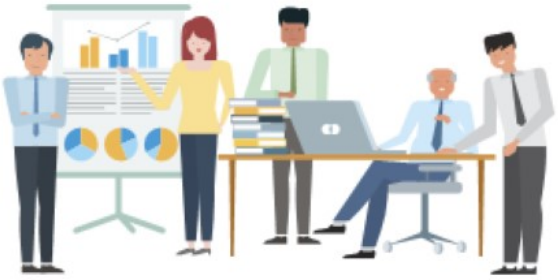

05 [수행기관 의무사항

해외기관

- 해외기관은 파견인력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공간을 활용·지원해야함
- 1명의 해외 지도인력이 동시에 지도하는 파견인력 5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
- 해외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과제 협약 후 해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함
  * 협약 후 주관기관은 해외 기관과 계약을 지체없이 추진하고 1개월 이내에 미체결시 즉시 전문기관에 알려야 함
- 해외기관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는 사전에 과학기술인번호를 발급해야함 (NTIS 참조)
- 해외 기관의 간접비는 자체 간접비 비율 적용 가능

파견인력

-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모두 해당)을 통해 해외파견업무를 수행한 자는 중복하여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음
- 주관기관은 파견인력에 대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결과 및 파견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인턴십(단일)의 경우, 선발계획만 제출 가능
- 주관기관은 '20년 내에 모든 파견인력을 출국('20.11.30 이전)시켜야하며, 파견기간은 반드시 과제기간 중 최소 6개월(연속 180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수행되어야 함
- 파견기간 중 과제 참여율은 100%를 원칙이나, 他과제 참여 시 최소 70% 이상 보장
- 해외 기관에서 인건비에 준하는 수당(지급받는 모든 비용 포함)을 지원받을 시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 사업비 관리규정' 내 인건비 산정 기준 차액 지원 예정

06 [파견인력 유의사항

01

파견기간 중 불가피하게
국내 허용 체류 기간은
최대 2주 이내 준수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해외 파견기관 내
지속적인 근무를 요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증빙
* 단, 천재지변, 건강악화 등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은 예외
* 국내 체류를 위한 제비용은 연구비 집행 불가

02

파견인력은 파견종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미복귀, 중도 포기, 신분변화
(자퇴, 퇴학 등) 시 **정부지원금
환수 예정**

* 1개월 이내 귀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03

파견기간 내 국내 체류일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 수에 해당하는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

* 결과보고서 내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07 [평가기준 및 절차

01	02	03	04	05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발표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주관기관 최종 확정
’20.3.23~3.31	’20. 4월 2주	’20. 4월 4주	’20. 5월 1주	’20. 5월 2주

평가 절차

- 전문기관에서 신청자격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최대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에 소재**한 경우 (2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포항공대 제외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점수를 포함시킴**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과제에 대해 **“지원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07 [평가기준 및 절차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사업수행 능력 45%	항목 0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5
	항목 02 **국내 주관기관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 국내 수행기관 연구진 전문성 및 역량 ▫ 해외 기관과의 협력연구 방향	15
	항목 03 **해외 협력기관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 해외 기관의 ICT 선도기술 보유 여부 ▫ 해외 기관 연구진의 전문성 및 역량, 지도인력의 역량 ▫ 해외 협력연구를 위한 해외 협력기관 내 연구공간 등 확보여부	25
연구 / 인력양성 계획 45%	항목 01 **연구/실무프로젝트 주제 및 목표의 ICT 선도기술분야와의 부합성 및 우수성** ▫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AR/VR, 블록체인/핀테크 등 ▫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및 과제 우수성	15
	항목 02 **과제수행 및 인력양성 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 국제 공동 연구 등 연구계획 중점 ▫ 해외파견 인력 선발 및 공동 연구 수행계획 등 **운영계획 효율성** ▫ 파견인력 우수성 및 전문성 ▫ 파견인력 현지 지도 및 관리 계획	25
	항목 03 **예산 활용의 적정성**	5
기대효과 10%	항목 01 **연구 및 인력양성 기대효과** ▫ 협력연구를 통한 국내 수행대학 ICT 선도기술 분야 연구전략 방향 ▫ ICT선도기술 인력양성을 통한 관련 산업계 배출 파급효과	5
	항목 02 **후속 협력 연구 과제 등 연구성과 및 인력 파견 파급 효과** ▫ 연구결과 보고서, 연구노트 등 성과 관리 및 활용 방안	5

08 [추진일정 및 신청안내

SCHEDULE

2020

	2~3월	4~5월	5월	6월~	'21. 7.15
추진 내용	사업공고(2.17~3.31) 및 접수(3.23~3.31)	사업계획 검토 및 주관기관 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및 파견	최종보고서 제출

공고기간 2020. 2. 17.(월) ~ 3. 31.(화)

제출기한 2020. 3. 23.(월) 09시 ~ 3. 31.(화) 18시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를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 신청서 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만 접수 가능(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 직인, 서명한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

제출 서류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
스캔본	별첨 포함, 표지 및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신청서와 별도 파일

사업관련 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담당

정 경 찬 수석	jkchan@iitp.kr	042-612-8435
조 혜 지 책임	asdf@iitp.kr	042-612-8439
김 지 현 선임	jhkim@iitp.kr	042-612-8440

전산 등록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 042-612-8060

09 [예산활용 예시

공동연구 단일형으로 2명을 파견

(예) 총 4명 참여, 2명 파견 시 (4명 참여율 20%, 파견인력 2명 파견기간 참여율 100%, 12개월 참여, 파견기간 6개월) (해외기관 연구비 50백만 원 별도)

비 목 별		사 업 비	비 고
직 접 비		137,088천원	-
❶ 인건비		41,280천원	-
학생인건비	파견인력	30,96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100%) x 6개월 → 2,500천원 x 6개월 = 15,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100%) x 6개월 → 1,800천원 x 6개월 = 10,80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20%) x 6개월 → 2,500천원 x 0.2 x 6개월 = 3,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20%) x 6개월 → 1,800천원 x 0.2 x 6개월 = 2,160천원
	참여연구원	10,32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20%) x 12개월 → 2,500천원 x 0.2 x 12개월 = 6,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20%) x 12개월 → 1,800천원 x 0.2 x 12개월 = 4,320천원
❷ 연구활동비		87,552천원	-
• 파견인력 체재비 * 체재비 산정기준(미국, 뉴욕)		24,552천원	▸ 박사 1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 12,276천원 ▸ 석사 1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 12,276천원
• 파견인력 출국준비금		10,000천원	▸ 파견인력 2명 X 5,000천원 = 10,000천원 * 항공료, 비자수수료, 보험료 등
• 과제 연구비		53,000천원	▸ (국외여비) 4,000천원 x 3명 = 12,000천원 ▸ (공동세미나 개최) 16,000천원 ▸ (세미나 참가비) 5,000천원 ▸ (정보수집비 및 기타) 10,000천원 ▸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10,000천원
❸ 연구수당		8,256천원	인건비의 20% 이내
간 접 비		12,912천원	직접비의 10% 이내
합 계		150,000천원	-

09 [예산활용 예시

공동연구로 2명 파견, 인턴십으로 1명 총 3명 파견

(예) **공동연구** : 총 4명 참여, 2명 파견 시 (4명 참여율 20%, 파견인력 2명 파견기간 참여율 100%, 12개월참여,파견기간6개월) (해외기관 연구비 50백만원 별도)
인턴십 : 총 1명 참여/파견 시 (파견기간 6개월)

비 목 별		사 업 비	비 고
직 접 비		**165,164천원**	-
❶ 인건비		41,280천원	-
학생인건비	파견인력	**30,96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100%) x 6개월 → 2,500천원 x 6개월 = 15,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100%) x 6개월 → 1,800천원 x 6개월 = 10,80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20%) x 6개월 → 2,500천원 x 0.2 x 6개월 = 3,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20%) x 6개월 → 1,800천원 x 0.2 x 6개월 = 2,160천원
	참여연구원	10,32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20%) x 12개월 → 2,500천원 x 0.2 x 12개월 = 6,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20%) x 12개월 → 1,800천원 x 0.2 x 12개월 = 4,320천원
❷ 연구활동비		115,628천원	-
• 파견인력 체재비 * 체재비 산정기준(미국, 뉴욕)		**36,828천원**	▸ 박사 1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 12,276천원 ▸ 석사 2명 x 6개월 → 2명 X 2,046천원 x 6개월 = 24,552천원
• 파견인력 출국준비금		**15,000천원**	▸ 파견인력 3명 X 5,000천원 = 15,000천원 * 항공료, 비자수수료, 보험료 등
• 과제 연구비 ❸		63,800천원	▸ (국외여비) 4,000천원 x 3명 = 12,000천원 ▸ (공동세미나 개최) 16,000천원 ▸ (세미나 참가비) 5,000천원 ▸ (정보수집비 및 기타) 10,000천원 ▸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10,000천원 ▸ (연구활동지원비:인턴십 인건비) 석사 1명 X 6개월 → 1명 X 1,800천원 x 6개월 = 10,800천원
연구수당		8,256천원	인건비의 20% 이내
간 접 비		**14,836천원**	**직접비의 10% 이내**
합 계		**180,000천원**	-

09 [예산활용 예시

공동연구로 2명, 자율과정으로 2명 총 4명 파견

(예) **공동연구** : 총 4명 참여, 2명 파견 시 (4명 참여율 20%, 파견인력 2명 파견기간 참여율 100%, 12개월참여,파견기간6개월) (해외기관 연구비 50백만원별도)
자율과정(학점연계) : 총 2명 참여/파견 시 (파견기간 6개월)

비 목 별		사 업 비	비 고
직 접 비		**255,640천원**	-
❶ 인건비		41,280천원	-
학생인건비	파견인력	**30,96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100%) x 6개월 → 2,500천원 x 6개월 = 15,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100%) x 6개월 → 1,800천원 x 6개월 = 10,80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20%) x 6개월 → 2,500천원 x 0.2 x 6개월 = 3,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20%) x 6개월 → 1,800천원 x 0.2 x 6개월 = 2,160천원
	참여연구원	10,320천원	▸ 박사 1명 (참여율 20%) x 12개월 → 2,500천원 x 0.2 x 12개월 = 6,000천원 ▸ 석사 1명 (참여율 20%) x 12개월 → 1,800천원 x 0.2 x 12개월 = 4,320천원
❷ 연구활동비		206,104천원	-
• 파견인력 체재비 * 체재비 산정기준(미국, 뉴욕)		**49,104천원**	▸ 박사 1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 12,276천원 ▸ 석사 3명 x 6개월 → 3명 X 2,046천원 x 6개월 = 36,828천원
• 파견인력 출국준비금		**20,000천원**	▸ 파견인력 4명 X 5,000천원 = 20,000천원 * 항공료, 비자수수료, 보험료 등
❸ • 과제 연구비		137,000천원	▸ (국외여비) 4,000천원 x 4명 = 16,000천원 ▸ (공동세미나 개최) 16,000천원 ▸ (세미나 참가비) 5,000천원 ▸ (정보수집비 및 기타) 20,000천원 ▸ 행사(성과발표회 등) 개최 10,000천원 ▸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10,000천원 ▸ (교육훈련비 : 자율과정) 60,000천원
연구수당		8,256천원	인건비의 20% 이내
간 접 비		**24,360천원**	**직접비의 10% 이내**
합 계		**280,000천원**	-

09 [예산활용 예시

인턴십으로 2명, 자율과정으로 2명 총 4명 파견

(예) **인턴십** : 총 2명 파견 시 (석사 1명, 박사 1명, 파견기간 6개월)
자율과정(학점연계) : 총 2명 참여/파견 시 (석사 2명, 파견기간 6개월)

비 목 별		사 업 비	비 고
직 접 비		-	-
❶ 인건비		-	-
학생인건비	파견인력	-	-
	참여연구원	-	-
❷ 연구활동비		186,904천원	-
• 파견인력 체재비 * 체재비 산정기준(미국, 뉴욕)		49,104천원	▸ 박사 1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 12,276천원 ▸ 석사 3명 x 6개월 → 3명 X 2,046천원 x 6개월 = 36,828천원
• 파견인력 출국준비금		20,000천원	▸ 파견인력 4명 X 5,000천원 = 20,000천원 * 항공료, 비자수수료, 보험료 등
❸ • 과제 연구비		117,800천원	▸ (국외여비) 4,000천원 x 3명 = 12,000천원 ▸ (행사(성과 발표회 등) 개최 5,000천원 ▸ (위원회 수당) 5,000 ▸ (홍보 등 기타 수수료) 10,000 ▸ (연구활동지원비:인턴십인건비) 석사 1명 X 6개월 → 1명 X 1,800천원 x 6개월 = 10,800천원 박사 1명 X 6개월 → 1명 X 2,500천원 x 6개월 = 15,000천원 ▸ (교육훈련비 : 자율과정) 60,000천원
연구수당		-	인건비의 20% 이내
간 접 비		13,096천원	직접비의 10% 이내
합 계		200,000천원	-

09 [예산활용 예시

인턴십 단독 | 석사 5명(6개월), 박사 5명(6개월) 총 10명 파견

비 목 별	사 업 비	비 고
직 접 비	327,760천원	-
❶ 연구활동비	318,000천원	-
• 파견인력 체재비 * 체재비 산정기준(미국, 뉴욕)	122,760천원	박사 5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x 5명 = 61,380천원 석사 5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x 5명 = 61,380천원
• 파견인력 출국준비금	50,000천원	파견인력 10명 X 5,000천원 = 50,000천원 * 항공료, 비자수수료, 보험료 등
• 연구인력 활용비	129,000천원	(석사급 인턴수당) → 1,800천원 x 5명 x 6개월 = 54,000천원 (박사급 인턴수당) → 2,500천원 x 5명 x 6개월 = 75,000천원
• 과정 운영비	26,000천원	(국외여비) 4,000천원 x 2명 =8,000천원 (초기 정착지원 및 현지관리) (위원회 수당) 4,000천원 (행사 개최) 4,000천원 (성과발표회 등) (홍보 등 기타 수수료) 10,000천원
간 접 비	32,240천원	직접비의 10% 이내
합 계	360,000천원	-

09 [예산활용 예시

자율 과정(학점연계) 단독 | 석,박사 총 15명 (6개월) 파견

비 목 별	사 업 비	비 고
직 접 비	881,140천원	-
❶ 연구활동비	881,140천원	-
• 파견인력 체재비 * 체재비 산정기준(미국, 뉴욕)	184,140천원	▸ 박사 7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x 7명 = 85,932천원 ▸ 석사 8명 x 6개월 → 2,046천원 x 6개월 x 8명 = 98,208천원
• 파견인력 출국준비금	75,000천원	▸ 파견인력 15명 X 5,000천원 = 75,000천원 * 항공료, 비자수수료, 보험료 등
• 과정 운영비	622,000천원	▸ (국외여비) 4,000천원 x 3명 = 12,000천원 (초기 정착지원 및 현지관리) ▸ (행사 개최) 10,000천원 (성과발표회 등) ▸ (홍보 등 기타 수수료) 150,000천원 ▸ (교육훈련비) 450,000천원
간 접 비	68,860천원	직접비의 10% 이내
합 계	950,000천원	-

10 [FAQ

Q1 **본 사업은 3책 5공 해당사업인가요?**

A1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인턴십 유형의 경우 총괄책임자를 교원이 아닌 행정 조직의 장이 맡는다면 3책 5공 조건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Q2 **해외 대학 국내 소재 분교의 경우 해외 대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2 아니오, 해당 대학은 국내 대학으로 분류되므로 국내 주관대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국내 기업 해외 소재 법인도 해외기관으로 인정되나요?**

A3 네. 해외기관으로 인정합니다.

Q4 **과제의 연구비를 교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나요?**

A4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수 인건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정할 예정입니다.

Q5 **인턴십의 경우 본교와 분교가 각각 지원 가능한가요?**

A5 네. 별도의 대학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10 [FAQ

Q6 파견 인력은 올해 출국 해야하나요?

A6 사업기간('20.6.1~'21.5.31)을 고려하면 내년에 출국 시 최소 파견기간 6개월(180일)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제 파견인력은 올해('20. 11. 30 이전)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Q7 과제 연구비는 어떤 내역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7 공동연구 시 연구비는 연구에 참여하는 국내·외 참여연구원 인건비, 국제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행사 개최비, 정보 수집비, 기타 논문 게재료 및 수수료, 연구기자재 구입 및 임차, 연구활동 추진비, 연구수당 등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집행 가능합니다.

Q8 해외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일 경우 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A8 공동연구기관으로 등록하며, 해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구분"을 외국기관으로 선택하면, 필수입력 사항 없이 등록가능합니다. (주관기관에서 등록 요망) 또한 정산 시 주관기관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대학, 연구소 등은 기 등록 여부 확인 / 해외기관의 총괄책임자 과학기술인번호가 필요하므로 외국인 전용으로 사전 발급 요망(NTIS 참조)

Q9 총괄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A9 최소 10% 참여율이 요구됩니다.

10 [FAQ

Q10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A10 최소 10% 참여율이 요구됩니다. (파견인력의 국내 연구기간 중 참여율은 최소 30%를 권고)
또한, 파견인력은 파견기간 중 100%의 과제 참여율이 원칙이며, 타과제 참여 시 최소 70%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Q11 '19년도 파견인력을 '20년 신규과제에서 파견인력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11 파견인력으로 지원은 불가능하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국내 연구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과제 수혜자는 모두 불가)

Q12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인력파견이 가능합니까?

A12 아니오, 인력파견 및 과제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연구 및 파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Q13 학생을 중복해서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3 인턴십+자율, 공동연구+인턴십 등 2개 이상이 결합된 지원과정의 경우 12개월 내에서 중복 파견이 가능하나, 수혜 및 배출인력 성과는 1명으로 인정됩니다.

10 [FAQ

Q14 현재 연구년에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A14 과제 접수 전에 연구년인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과제 접수 후에 연구년에 들어가는 경우, 파견국, 학생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총괄책임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과제 중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Q15 해외대학의 제안서 리스트의 과제로 과제 신청 시, 어떤 우대사항이 있나요?

A15 과제 선정 과정에서 우대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외 협력 기관이 없으나 과제 수행의사가 있는 국내 대학의 편의를 위해 IITP에서 별도로 재미과학자협회(KSEA), 대사관(캐나다, 네덜란드 등)을 통해 현지에 수요조사를 실시, 해외 대학/기업/연구소 중 한국 대학과 공동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기관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의 편의 상 제공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Q16 과제 신청 자격은 국내 대학 ICT·SW 학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15 과제 분야가 ICT 선도기술 분야이면 됩니다. 학과, 전공 등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의 응답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개설
: https://open.kakao.com/o/g8UrwDYb

사업관련 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담당

정 경 찬 수석	jkchan@iitp.kr	042-612-8435
조 혜 지 책임	asdf@iitp.kr	042-612-8439
김 지 현 선임	jhkim@iitp.kr	042-612-8440

전산 등록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
042-612-80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